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72
----------	-------

발의연월일 : 2025. 9. 30.

발 의 자 : 안상훈 · 김성원 · 고동진
박덕흠 · 신동욱 · 김용태
임이자 · 김은혜 · 박성훈
이성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사망·고령·심신장애 등의 경우 대출원리금을 면제하고 있음.

미국의 학자금대출 관련 법률인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HEA)은 연방공무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정 조건 충족 시 잔존 원리금을 일시에 면제하는 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대상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학자금대출 관련 혜택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훈·보상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음.

이에 특정 공공분야에 종사한 자의 학자금 대출원리금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특별한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훈·보상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면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분야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본인, 배우자 및 직계 비속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서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성이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면제를 공공분야종사

자의 근무 및 재직 기간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출원리금 면제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면제 실적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면제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별 대출원리금의 면제비율, 면제 실적 평가 및 면제비율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공공분야종사자의 대출원리금 면제 신청 및 확인 등) ① 공공분야종사자는 대출원리금 면제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출원리금 면제 신청을 한 공공분야종사자가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공분야종사자의 재직 여부, 재직기간, 직무 특성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출원리금 면제 신청을 한 공공분야종사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이미 면제된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공공분야종사자가 대출원리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한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구분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면제 신청서의 제출 방법·절차, 대

출원리금의 환수 범위·방법·절차 및 대출원리금의 반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원리금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면제·환수 및 반환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조의3(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면제 특례) ①</u> <u>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분야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u> <u>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u> <u>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본인, 배우자 및 직계 비속</u> <u>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u> <u>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u> <u>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u>

벽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서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
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사를 말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공성이 높은 업무에 종
사하는 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면제를 공공분야
종사자의 근무 및 재직 기간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출원리금 면제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년 면제 실적을 평가하고 필요
한 경우 면제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
직기간별 대출원리금의 면제비
율, 면제 실적 평가 및 면제비
율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공공분야종사자의 대

<신 설>

출원리금 면제 신청 및 확인 등) ① 공공분야종사자는 대출원리금 면제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출원리금 면제 신청을 한 공공분야종사자가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공분야종사자의 재직 여부, 재직기간, 직무 특성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출원리금 면제 신청을 한 공공분야종사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이미 면제된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공공분야종사자가 대출원리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한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구분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u>른 면제 신청서의 제출 방법 ·</u> <u>절차, 대출원리금의 환수 범위</u> <u>· 방법 · 절차 및 대출원리금의</u> <u>반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u>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